

자본시장 혁신과제 11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2019. 5. 2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개선방안	7
1.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8
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8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9
4. 재위탁 원칙적 허용	9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10
6.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11
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11
IV. 기대효과	13
V. 향후 추진계획	14

I.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전산 프로세스 외부화, 빅데이터 분석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고객 관리 등 핀테크 추세가 가속화
 -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은 콜센터, IT 등 단순 후선업무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 등 Front 업무까지 위탁
 - 최근에는 금융업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Fin-tech 추세에 더해 IT 기업이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Tech-fin도 진행
-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많아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
 -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활용도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 위탁업무 사전보고 건수: ('10년) 597, ('13년) 136, ('16년) 52, ('18년) 30
 - 위탁업무의 종류도 실명확인(35%), 고객센터 업무, 채권추심, 우편업무 등 대부분 단순업무로 구성
 - IT 기업과의 협업 및 업무 위탁이 활발한 타 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계의 역할과 관심도 부족한 상황
- 또한, 겸영·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겸영·부수업무 확장이 차이나이즈 월 규제와 맞물려 원칙적 허용이라는 법령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

⇒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무 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위탁 규제

가. 규제 현황

- (규제체계) 은행·보험 등 타 업권은 업무위탁 관련 일반규정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별도 규제가 적용

<금융회사 위탁규제 현황>

		금융투자업자	타 금융기관
구분	법	자본시장법	-
	규정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업무위탁 범위)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경영업무·부수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본질적 업무)의 경우,
 - ① 핵심업무와 ②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
 - 핵심업무 :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비핵심업무 :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수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
 - 재위탁이 전면 허용되어 있는 타 업권과 달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고, 투자자보호를 해하지 않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 * 전산관리·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분석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

- (보고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감원에 보고할 필요(사전보고 원칙)
 -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가능
- (투자자 보호 장치) 위법·부당한 업무위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위탁자에게는 업무위탁 운영기준 마련, 위탁계약 체결 및 보고의무 등이 부여되고, 피해발생 시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발생
 - 특정사유 발생시* 금융위는 위탁계약을 제한·시정 및 취소·변경할 수 있고, 금감원은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도 보유
 -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나. 문제점

- 타 업권과 비교시 금융투자업자는 다소 엄격한 자본시장법령상 업무위탁 규제를 적용받아 업권간 규제차익 발생
 - 법령에서 업무위탁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에 대한 위탁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
 - 재위탁의 원칙적 금지로 인해 외국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본사 시스템·서비스 활용에 제약 존재*

* 외국계 증권회사가 **Global 본사의 시스템** 사용시(원위탁), Global 본사가 해당 시스템을 **외부벤더에 위탁**하는 경우(재위탁) 재위탁 규제로 인해 위탁이 제한



- 또한, 업무위탁 사전보고는 사전승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장상황에 대응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업무위탁이 어려움

참고1

금융업권별 업무위탁 관련 규제 비교

구분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법)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
위탁 가능 범위	非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위탁가능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수탁자 제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	- 위탁불가(원칙) - 예외적 위탁가능 ^①
		핵심 업무	
투자자 보호장치	-업무위탁 운영기준 마련 의무 -위탁내용의 계약서·투자자설명서 기재의무 및 위탁내용 변경시 투자자 통보의무		-업무 위수탁기준 운영기준 마련 의무
손해배상책임	-연대책임(민법 756조 준용)		-연대책임
감독·검사	-법상 <u>금감원의 수검의무 직접 부과</u> -금융위는 <u>업무위탁 제한·시정명령권, 위탁 계약의 취소·변경 명령권</u> 행사 가능		-수탁자의 감독당국 <u>검사 수용의무를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에 포함</u> -금감원은 <u>업무위탁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u>
보고	-사전보고 원칙(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보고) -사후보고 예외(<u>업무보고서 분기보고</u>)		-사전보고 원칙(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보고) -사후보고 예외(<u>업무보고서 반기보고</u>)
재위탁	-재위탁 원칙적 불가 -재위탁 예외적 허용(전산관리·운영업무 등)		-재위탁 전면 허용

①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2)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미국·영국·EU 등 해외 주요국은 업무위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리스크관리 및 사후감독에 감독 역량을 집중

- (미국) 법률에서는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FRB는 지침을 통해 업무위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종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상위 경영진 및 이사 등의 책임, 계약상 요건 등을 제시

- (영국) 법률상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감독 규정*에서 업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제

* SYSC(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

<SYSC(8.1) 주요내용>

- (업무위탁 범위) 업무위탁은 전반적으로 허용되나, 내부통제의 질 또는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업무위탁은 허용되지 않음
- (계약체결의무) 금융회사는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반영된 서면계약을 작성하여야 함
- (보고의무)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시 PRA(PCA)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

- (EU)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업무위탁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Outsourcing)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제시*(’06.12월)

* EU 회원국의 감독당국은 CEBS의 업무위탁 가이드라인을 자국 상황에 맞추어 변경·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EU 업무위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업무위탁 범위) 리스크 관리 등 핵심경영기능(Core management function)은 위탁 불가
 - 핵심업무(Critical and important operaional function)는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받은 기관을 제외하고는 위탁 불가
- (고위경영진 책임) 고위경영진이 업무위탁 관련 위험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해당 책임은 위임될 수 없음
- (종합정책 마련)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의 쏠쏠 측면을 다루는 **종합정책 마련** 필요

가. 규제 현황

□ (겸영업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업무의 겸영이 가능

○ 다만, 겸영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를 법, 시행령 등에 규정*

*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자금이체 업무, 외국환 업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

○ 겸영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자본시장법 및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을 요하는 금융업무의 경우 제외

□ (부수업무)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특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Negative 규제방식)

* SPC 운영·관리업무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리서치 서비스 제공, 금융교육, 증권업 관련 IT 서비스 제공 등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제외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 부수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영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나. 문제점

□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 추진이 곤란

○ 특히,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Ⅲ. 개선방안

기본방향

- ◆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 금융투자업자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경영·부수업무 추진을 지원
 -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현행	개선
과제1	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전면 금지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과제2	법령에서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세세히 열거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과제3	금융투자업권에만 지정대리인 제도 미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과제4	재위탁 원칙적 금지	재위탁 원칙적 허용
과제5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본질적 업무 여부에 따라 제한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자유로운 위탁 허용
과제6	경영·부수업무 등 수행 7일전 금감원에 사전보고 원칙	경영·부수업무 등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과제7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감독권 보유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투자업의 자유로운 업무위탁과 경영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혁신금융 선도

1.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 (현행)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등 핵심업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본질적 업무 중 상당 부분이 핵심업무로 분류되어 관련 업무 인가 취득자에 대해서도 업무 위탁이 불가능
- (개선방안)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내부통제업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외부 위탁은 부적절 (다만, 현재도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자세하게 열거
- (개선방안)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 (현행) 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17.11월)하여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업무위탁 허용범위 개선 전·후 비교>

현행	본질적 업무	핵심업무	위탁불가
		非 핵심업무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非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개선	본질적 업무	내부통제업무	위탁불가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한시면제)
	非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4. 재위탁 원칙적 허용

□ (현행)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가능

* 전산관리·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분석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

□ (개선방안)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 (현행) 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상 ‘정보처리’ 업무의 정의 :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금융투자회사와 타 업권 금융회사간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비교>

	금융투자업자	타 업권 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사무	· 자본시장법 우선 적용 · 단순 정보처리 업무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	·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 적용 · 단순 정보처리 업무의 경우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위탁가능
보고절차	· 사전보고 원칙	· 사후보고 원칙(정보 유형별로 보고 시기 차등화)
재위탁	·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 전면허용

□ (개선방안)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6. 경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
 - 경영·부수업무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개선방안) 업무위탁 및 경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

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현행)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경영·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업무위탁) 위탁자는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 기록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필요
 -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자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
 - 특정사유 발생시* 금융위는 위탁계약을 제한·시정 및 취소·변경할 수 있고, 금감원은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을 보유
 -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 (경영·부수업무) 경영·부수업무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할 필요
 - 부수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 가능

<업무위탁 관련 현행 투자자 보호 장치>

- 자본시장법은 **업무위탁** 관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위탁계약 체결단계, ②사후 모니터링단계, ③피해발생 구제단계 등 **단계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 ① **(위탁계약 체결단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42⑦),
-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42②),
 -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42⑧)하고 **금감원에 보고**(§42②)하여야 함
- ② **(사후 모니터링단계)**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계약을 제한·시정**할 수 있고(§42③),
-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43②)
 - 한편, 금감원은 **수탁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43①)
- ③ **(피해발생 구제단계)**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수탁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함(§42⑨)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약

- **(개선방안)**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징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IV. 기대효과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투자업 혁신 촉진과 서비스 고도화

-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 (예) 대체투자, 가치투자, 사회책임투자 등 고객이 관심있는 투자 테마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채팅창 방식의 UI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투자의사결정 지원 등

<자본시장 관련 핀테크 적용 가능 분야>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데이터 / 분석 / 리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보고·공시 √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 컴플라이언스 √ IR/의결권서비스 √ 리스크 관리 √ 청산/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소프트웨어·플랫폼 √ 데이터 하드웨어 √ FX거래 플랫폼 /네트워크 √ 지연 관리/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 √ 포트폴리오 관리 √ 어드바이저용 재무설계 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통합/리서치 툴 √ 기업/주식 투자 리서치

□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 가능

* (예)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플랫폼을 아웃소싱하여 대규모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

- 특히, 중·소형 특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후선업무 및 비핵심기능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특화 분야에 역량 집중 가능

□ 금융 소비자의 편익 제고

-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기업간 업무제휴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 투자자 편익 제고

- 혁신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 (예) 금융투자업자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Player와의 업무위탁을 통해 자사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 확대 가능

V. 향후 추진계획

- 혁신 IT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금융투자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
 - '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 과제별 필요 조치사항 >

추진 과제	필요 조치사항
① 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②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③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既 시행
④ 재위탁 원칙적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
⑤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⑥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업무위탁 보고시점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경영·부수업무 보고시점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자본시장법 개정
⑦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재위탁시 원위탁자의 배상책임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
- 부당·위법한 경영업무에 대한 중지명령·시정조치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

참고3

업무위탁 허용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 45, § 47]

	본질적업무 (수탁자 자격제한)	핵심업무 (위탁금지)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감시인 업무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제외) ▶ 내부감사 업무 ▶ 위험관리업무 ▶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 * 다만, 해당업무 관련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 가능
투자매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제시업무 ▶ 매매주문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 ▶ 증권인수 및 인수대상 증권 가치 분석업무 ▶ 인수증권 가격결정, 청약사무 수행 및 배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¹⁾ ▶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제시업무 ▶ 증권인수업무
투자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 ▶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업무 ▶ 매매주문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¹⁾ ▶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업무
집합투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계약체결·해지, 투자 회사·조합 등 설립업무 ▶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계약체결·해지, 투자 회사·조합 등 설립업무 ▶ 원화자산 운용 (집합투자업자에게 50% 이내 위탁하는 경우 제외)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문계약 체결·해지업무 ▶ 투자판단 제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문계약 체결·해지업무 ▶ 원화자산 투자판단 제공 (금융투자업자에게 50% 이내 위탁하는 경우 제외)
투자일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일임계약 체결·해지업무 ▶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일임계약 체결·해지업무 ▶ 원화자산 운용 (금융투자업자에게 50% 이내 위탁하는 경우 제외)
신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계약 체결·해지 업무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계약 체결·해지업무 ▶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채권추심업무제외) ▶ 신탁재산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계약 체결·해지 업무 ▶ 신탁재산(예탁증권 및 외화자산은 제외)의 보관·관리업무

1) 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 제외

자본시장법령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종류	<p>①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상 별도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업무 (법 제40조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보험법) -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자본시장법) - 외국환 중개 업무(외국환거래법) - 퇴직연금사업자 업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담보부사채신탁 업무(담보부사채신탁법) - 자산관리회사 업무(부동산투자회사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산업발전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업무(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 전자금융업무(전자금융거래법)
	<p>②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법 제40조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자금이체 업무(전자금융거래법)
	<p>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법 제40조 제3호)</p>
	<p>④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법 제40조 제4호)</p>
	<p>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법 제40조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및 수탁 업무 -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 관리 업무 - 사채모집의 수탁 업무 - 기업금융업무 및 PF대출 업무 - 증권대차거래 및 중개·주선·대리 업무 - 지급보증 업무 - 원화 CD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 - 대출채권 등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 - 대출 중개·주선·대리 업무 - 금지금 매매 및 중개 업무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

참고5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분류	부수업무
M&A 등 기업금융 업무지원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 업무,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유·무형자산의 매각 혹은 인수와 관련한 자문 업무,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업무
해외펀드 투자지원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역외펀드 중개 및 판매업무 관련 사후관리 서비스지원, 해외집합투자업자를 위한 국내 마케팅 및 기타 사무수탁업무 등 사후관리,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하여 펀드 자금조달 자문업무, 해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사모펀드 자금조달 자문 서비스
부동산 자산 활용	회사가 사용중인 임차사옥 건물내의 유희공간 또는 회의실의 전대 및 대관, 부동산 임대업무
금융관련자 연결 서비스	Fund Placement Agent Business, 고객이 직접 체결한 해외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해외 중개업자를 소개해주는 업무
계열사 지원	해외계열사에 대한 세무관리 지원업무, 계열사에 대한 전산센터 IT업무 지원, 계열회사에 대한 총무업무 지원, 계열회사의 금융상품 광고물 비치
SPC 운영·관리 업무 지원	상법상 자산유동화 목적 SPC의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관련 업무
금융정보의 판매, 출판 등	HTS내 유용한 차트제공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무, 증권 가치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판매하는 업무, 간행물 및 도서의 출판업무
광고 관련	광고대행업무, 금융투자업에 관한 영상광고 제작물 사용권 대여 및 판매
금융교육	증권에 관한 연수, 금융투자업관련 연수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부동산 사업관련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자문업무, 고객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매매의 중개 또는 자문업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업무수행 시 자금관리 및 특수목적법인을 위한 사무업무 처리
금융기관에 대한 리서치 서비스 제공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리서치 서비스 제공,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필요한 투자전략 자료 및 계량분석자료 제공
신탁 관련	유언서 보관 및 유언의 집행에 관한 업무, 신탁업무 영위 및 신탁계약 이행에 필요한 금융자문 서비스
증권IT	증권업 관련된 전산시스템·S/W 대여·판매업무 및 증권업 관련 전산개발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IT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대여 업무
퇴직연금 시스템 지원	퇴직연금업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아래의 업무 (1)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 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 서비스 (2) 퇴직연금에 투입된 인력 및 설비를 활용한 관련 업무의 수탁 등 * 다만,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금융관련 자문, 지원 업무	대출의 중개·추진과 관련한 자금집행 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 금융업무에 대한 상담, 자문 또는 조력업무, 부실채권 투자자문 업무, 자금수요자의 대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업무, 금융투자업 관련 해외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 Syndicated Loan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 원자재 실물 ETF 지정참가회사로서 창고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무, 유동성리스크관리업무
유가증권 보호예수	증권업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업무
대리인 업무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